

1.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중 개정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8-18호 1998. 1. 22.

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노임단가”를 “감리원의 노임단가(건축감리원은 건설 및 기타부문의 중급기능사 노임단가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초급감리원으로”를 “초급감리원, 검측감리원으로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중 “노임단가는 1일 8시간(토요일 4시간),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상한다”로 한다.

- 부 칙 -

1. 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감리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기준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된 감리용역의 경우는 잔여감리기간 동안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주택회보